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577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김대수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6. 2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단31880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10. 25. 접수 제25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단체(이하 ‘A단체’이라고 한다)는 2019. 9. 2. B와 사이에, B가 E은행(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중 80%인 160,000,000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 2019. 9. 3.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20. 4. 8.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대손판정을 받는 등 보증사고를 내었고, A단체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4. 14. E에 162,622,3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20. 4. 23. 기준 구상금채권 잔액은 162,815,765원이다.

다. 한편 B는 2019. 10. 18. 자신의 처제1)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0. 2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는 2020. 2. 27. 부산지방법원 2020하단1001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1. 3.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A단체을 포함한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A단체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의 어머니이자 B의 전 장모인 J는 2008. 12.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12. 10. 실제 임대차보증금 수수 없이 추후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는바, 위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B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만약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B는 2017. 12. 10. J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한 결과가 되어, B가 실제 사해행위를 한 시점은 2017. 12. 10.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로부터 사해행위의 제척기간²⁾이 이미 도과하였다.

3) 설령 위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논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J 앞으로 시가를 상회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므로, B가 이를 피고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부인권³⁾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1) B가 A단체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E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019.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20. 2. 27.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1, 2, 4 내지 6, 9 내지 11, 13, 1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는 2008.경 J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명의수탁자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부터 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 J는 2002. 4. 26.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2.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8. 11. 21. 사위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5.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J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제6호증의3)을 계속해서 소지하였고, 2020. 3. 31. 발급된 J의 주민등록초본(을 제1호증의1)에는 J가 배우자 O와 함께 2002. 5. 30.부터 위 발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해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피고는 J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두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가 2011. 4. 20. Q에게 J(R회사)에 대한 146,461,1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1. 4. 21. J에게 같은 날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을 제9호증의3)를 첨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자료가 남아있고, Q이 2011. 5. 24. J, O, B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 및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0306), 2011. 8. 12. J 측과 사이에 '87,9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완제확인서(을 제2호증의2)를 작성하고 2011. 8.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J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두었다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J는 2017. 12. 10.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후 2018. 1. 19.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J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2008. 12. 5.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50,000,000원보다 고액인 22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J와 B 사이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 위 임대차계약 무렵 실제로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례적인 계약체결, 계약서 작성 등 경위를 고려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는 B가 J에 대하여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B와 J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한다.

라) 한편 J는 2004. 8. 9. K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J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2008. 12. 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0. 5. 24.에서야 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이처럼 매매 이후에도 근저당권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매매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모습이다.

마) J의 계좌거래내역(을 제16, 17호증)에는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에 거주하다가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S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한 내역, 2019.경 T, U으로부터 매달 2층 부분의 차임으로 보이는 230,000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남아있는바, J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이후에도 2층 부분의 임대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바) B는 2019. 10. 18.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0. 22. 자신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다른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자 명의를 피고로 기재함으로써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 29. L으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이 제기되어(부산가정법원 2020년20066) 2020. 4. 28. ‘원고와 L은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B가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제인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도리어 이혼에 앞서 본래 J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이를 돌려주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 B는 J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8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B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수사를 받은 결과 2023. 3. 23.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것은 허위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B의 채무초과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 2차례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일부 주장을 보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한혜진, 판사 전유상

[별지]

목록

1. [토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 150㎡

2. [건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상

조표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9.87㎡, 2층 77.33㎡, 골.

1) B는 피고의 언니인 L과 1998.경 혼인하였다가 2020. 4. 28. 이혼하였다.

2)채무자회생법 제405조는 부인권행사의 기간을 파선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각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